
지 정 대 리 청 구 서 비 스 특 약 || 약 관



목



차

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II 약관	5
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	5
제1조【적용대상】	5
제2조【특약의 체결 및 소멸】	5
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	5
제3조【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】	5
제4조【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】	6
제3관 보험금 지급	6
제5조【보험금의 지급 절차】	7
제6조【보험금의 청구】	7
제4관 기타사항	8
제7조【주계약 및 특약 약관 규정의 준용】	8

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II 약관

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

제1조【적용대상】

이 특약은 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.

제2조【특약의 체결 및 소멸】

-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됩니다.
- ② 제1조(적용대상)의 계약이 해지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
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

제3조【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】

- ① 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지정하는 보험금의 대리청구인(이하 '지정대리청구인'이라 합니다)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 1. 제2항에서 정한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가능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대리청구인(2인 이내)에서 지정하되, 2인 지정 시 대표대리인 지정)을 기명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, 이하 '기명 지정대리청구인'이라 합니다.
 2. 제1호에도 불구하고, 계약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을 기명하여 지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무기명으로 제6조(보험금의 청구) 제1항 제4호의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, 이하 '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'이라 합니다. 다만, 지정된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.

지정대리청구인 지정 예시

- 기명 지정대리청구인(특정인을 대리 청구인으로 미리 지정)
 - 계약자가 기명하여 지정 : (예시) "김○○"
-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
(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,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수익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보험금을 대리 청구)
 - 계약자가 특정인을 기명하지 않고 지정 : (예시)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

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 판단 시점 예시

- 보험 가입 당시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(당시 해당 서류상 배우자 A)로 지정한 후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대리 청구하는 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B인 경우
→ 해당 시점 대리청구인은 제6조(보험금의 청구) 제1항 제4호로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 B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가능한 지정대리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 또한, 제4조(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)에 따른 변경 지정 또는 제6조(보험금의 청구)에 따른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

1.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
2.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

다만,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은 피보험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

③ 제1항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.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신청서(회사양식)
2.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등록부(가족관계증명서 등) 등 계약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3. 계약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,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본인 의사표시의 확인방법을 포함하며, 이하 '신분증'이라 합니다)
4.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(지정대리청구인용)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,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자가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2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.
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(적용대상)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.

제4조【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】

①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려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.

1.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(회사양식)
2.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등록부(가족관계증명서 등) 등 계약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3. 계약자의 신분증
4.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(지정대리청구인용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제3조(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)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자가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으로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.

제3관 보험금 지급

제5조【보험금의 지급 절차】

-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한 특별한 사정으로 제1조(적용대상)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6조(보험금의 청구)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해당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(사망보험금 제외)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2인의 기명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기명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, 대표기명 지정대리청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의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기명 지정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(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) 제1항 제2호의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이 제1조(적용대상)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(사망보험금 제외)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. 다만, 2인의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한 명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④ 제3조(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)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였으나 보험금의 청구 시점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가 아닐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.

제6조【보험금의 청구】

-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
 1. 청구서(회사양식)
 2. 사고증명서
 3.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
 4.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(가족관계증명서 등)
 5.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
-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 또는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사고증명서를 말하며, 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.

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

- ① 이 법에서 "의료기관"이란 의료인이 공중(公衆)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·조산의 업(이하 "의료업"이라 한다)을 하는 곳을 말한다.
-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1. 의원급 의료기관: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의원
 - 나. 치과의원
 - 다. 한의원
 2. 조산원: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·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.
 3. 병원급 의료기관: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- 가. 병원
- 나. 치과병원
- 다. 한방병원
- 라. 요양병원(「장애통증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- 마. 정신병원
- 바. 종합병원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※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.

제4관 기타사항

제7조【주계약 및 특약 약관 규정의 준용】

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 및 특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